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6
----------	-----

제출년월일 : 2005. 5. 19.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하여 엑스포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와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법인의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재단법인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고성군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나. 재단법인의 주무관청(경상남도)에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토록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안 제5조의 3)
- 다. 원활한 엑스포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 **[별첨]**
 -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 경상남도 개선 · 지도 권고사항
- 나.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5-114호 (4. 1 ~ 4. 20)
⇒ 의견 제출사항 없음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를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로 한다.

제5조의 제목“(출연금)”을“(출연금 등의 지원)”으로 하고, 동조 중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을 “엑스포 준비·운영을 위한 경비와”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중 “군수와 군의회에”를 “군수와 군의회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에게”로 한다.

제6조의 제목“(공유재산의 대부)”를“(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로 하고, 동조 중 “공유재산”을 “공유재산과 물품 등”으로 한다.

제8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u></p> <p>제5조(출연금) 군수는 재단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제4조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의3(출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출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u>군수와 군의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u>공유재산</u>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p> <p>제8조(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지방공무원법</u>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명 : <u>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u></p> <p>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 <u>준비·운영을 위한 경비와</u> ----- -----.</p> <p>제5조의3(출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 ----- ----- <u>군수와 군의회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에게</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 ----- ----- <u>공유재산과 물품</u> ----- -----.</p> <p>제8조(공무원 파견) ① ----- ----- <u>「지방공무원법」</u> ----- ----- -----.</p> <p>② (현행과 같음)</p>

[별첨]

참 고 자 료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 (예산 및 결산 등) ①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개시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회계년도 종료후에 사업실적과 예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경상남도(법무담당관) 자치법규 개선·지도사항(요약)

○ 법인 명칭에 관한 사항

- 조례안에 규정된 법인의 명칭과 실제 설립허가 된 법인의 명칭 일치
☞ 재단법인 정관 개정을 통한 명칭 변경 완료(2005. 2. 2)

○ 출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법인의 재산조성을 위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고성군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제5조의 제명을 「출연금 등의 지원」으로 하고, 내용을 「군수는 재단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운영을 위한 경비와 제4조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항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의 규정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내용을 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개정

※ 주무관청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제28조(문화관광부 소관)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의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권자인 경상남도지사